

선진 산업안전보건 정보습득 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프랑스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과 우리 공단과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에 따른 선진화된 건설재해예방 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 CRAMIF : Caisses regionales d'assurance maladie Ile-de-France

- 선진외국의 건설현장 견학을 통한 신기술공법 기술습득 , 공공발주공사 발주시스템 및 재해예방활동 등의 건설안전 동향 및 정보 수집

2. 출 장 자 : 2명

- 건설재해예방실 전문직 1급 정 성 훈
- 건설재해예방실 전문직 3급 김 용 수

3.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

-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 : Caisses regionales d'assurance maladie Ile-de-France)
- 프랑스 건설현장(2개소)
 - TOUR D2 현장 및 맥도날드 창고 개조현장 1/2 공구(아파트) 등 2개소

4. 출장 기간 : '13. 11. 17(일) ~ 11. 23(토) [5박 7일]

5. 주요 수행사항

- 프랑스 건설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수립 방법에 대한 한국과의 비교 분석
- 프랑스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개발 및 추진 현황 파악
- 프랑스 건설예방사업 예산 운영 현황 및 공단 사업과의 유사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프랑스 안전보건 우수사업장 방문을 통한 신기술공법 습득 및 선진 건설 재해예방 시스템 조사

6. 전체 출장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비 고
'13. 11. 17(일)	o 출국 (인천 → 프랑스 파리)	
'13. 11. 18(월)	o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 방문 - 프랑스 안전보건 정책수립 관련 정보 공유 - 프랑스 건설재해예방시스템 벤치마킹	
'13. 11. 19(화)	o 프랑스 안전보건 우수 사업장 방문 - 안전보건관련 프로그램 우수 사업장 견학 [맥도날드 창고 개조현장 1,2공구(아파트)]	
'13. 11. 20(수)	o 프랑스 안전보건 우수 사업장 방문 - 안전보건관련 프로그램 우수 사업장 견학 (TOUR D2 현장)	
'13. 11. 21(목)	o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 방문 - 프랑스의 건설안전 체계화와 건설현장내의 재해예방 활동 분야 토론 및 공단 사업과의 유사성 분석, 출장 정리	
'13. 11. 22(금) ~ 11. 23(토)	o 귀국 (프랑스 파리 → 11. 23(토) 인천 도착)	

II. 세부 수행사항

1. 프랑스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 기관현황

-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es

가. 기관 형태

- 프랑스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은 프랑스내에서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질병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 산하기관으로 CARSAT(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 CGSS(사회보장일반공단), CPAM(기초질병보험금고)이 있다.
- 프랑스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의 국제협력 업무(협정체결 포함)는 파리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에서 수행하고 있음

※ 실제 공단에서 방문한 기관은 프랑스 파리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보험 지역공단(CRAM-TS, 8개 중 1개 기관)

나. 기관 연혁

- 1945년 의료보험공단 창설
- 1961년 농업 의료보험제도 창설
- 1967년 CNAMTS 창설

3개 사회보험기금 기관 및 중앙기관 창설

- CNAMTS(프랑스 근로자건강보험기금) ; French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for Salaried Employees
- CNAVTS(프랑스 근로자고령보험기금) ; French National Old-Age Insurance Fund for Salaried Employees
- CNAF(프랑스 가족수당기금) ; French National Fund for Family Allowances
- ACOSS(사회보험중앙회) ; Central Agency of Social Security Organisations

- 2004년 의료보험 개편. 조직 강화

다. 기관 주소

- 위치 : National Sickness Insurance Fund of Salaried Workers (CNAMTS)

26/50 avenue du professeur André Lemierre, 75986 Paris Cedex
20, France

Tel.: +(33) 1 72 60 10 16 , Fax: +(33) 1 72 60 17 82

※ CRAMIF : 17, avenue de Flandre 75954 Paris Cedex 19, France

- 홈페이지 : <http://www.ameli.fr/>

라.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1) 주요업무

- 1) 프랑스의 사회보장체제는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Family Branch(가족부문), Retirement Branch(퇴직연금 부문), Illness Branch(질병부문), **산업재해부문(Professional Risks Branch)**으로 구성됨.

※ 산재보험 관련 업무 담당 부서

(DPR; Direction des Risques Professionnels)

2) CRAM과 CPAM 총괄

- CRAM (Caisses regionales d'assurance maladie, 지방질병보험금고)
: 초급질병보험금고를 관리하며, 전국 16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2010년 7월 이후 지방의료 조합 les caisses regionales d'assurance maladie(CRAM)은 파리근교 지역 의료 조합(la CRAM Ile-de-France)과 알자스모젤 지역의료조합(la CRAM d'Alsace-Moselle)을 제외하고 모두 CARSAT 조직으로 변경함. 지방 병원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료조합에서 행했던 역할이 확장됨.

- CPAM (Caisses primaires d'assurance maladie, 초급질병보험금고), 전국129개소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보상업무를 관리하고 보상업무를 담당

3) 의료진들과 함께 국가 자문기관의 임무

- 4) 다른 유럽 국가간의 교류 협력
- 5) 법적 감독임무
- 6) 정책 조정 기관
 - 정책입안자료 제공의 의무
- 7) 의료보험 조합기관 관리 연합 (UGECAM)그룹 기관

(2) 조직구성

청장(Director General)	
Medecin-conseil national, adjoint au directeur general (의료자문관 및 부청장)	
Direction de la strategie, des etudes et Des statistiques (전략, 연구 및 통계국)	
Direction deleguee a la gestion et a l'organisation des soins (치료관리 및 조직국)	
Direction deleguee aux operations (운영관리국)	
Direction du controle contentieux et de la repression des fraudes (소송관리국)	
Direction des risques Professionnels (재해위험관리국)	
Direction deleguee des systemes d'information (경영정보시스템국)	
Direction deleguee des finances et de la comptabilite (재무관리국)	
Direction de la Communication (홍보국)	
Direction de l'audit general, du reporting et du controle de gestion (감시국)	
Secretariat general (사무총장)	

2.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 기관 방문

가. 방문 내용

- (1) 방문일시 : 2013. 11. 18(월)
- (2) 면 담 자 : Jean-Claude POIRIER(Secretary General)
 - 파리지역 책임자 : Francois BLANCHARD
 - 건설관리 엔지니어 : Bruno BISSON, Guilhem BECAMEL
Pascal GRUDA
- (3) 장 소 : Room R 119 CRAMIF 19 place de l'Argonne 75019 PARIS
- (4) 주요회의 내용 :

〈 회 의 진 행 〉

- ▷ 09:00~09:15 프랑스 대표(Mr. Francois BLANCHARD 책임자) 인사말
 - CRAMIF 파리지역 책임자로서 환영하며, 건설현장 재해예방은 노동부(법과 정책)와 의료보험공단(안전관리)에서 관리 중으로 귀 기관의 방문을 환영함
 - ▷ 09:15~09:25 공단 대표(정성훈 실장) 인사말
 - 양국간의 기술협력 협정체결로 귀 국의 선진화된 건설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방문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ISSA 예방문화위원회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양 위원회가 협력하여 예방문화는 물론 건설위원회의 활동에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 한국에서 2015년 개최되는 국제산업보건대회(ICOH 2015)에 많은 참여를 바랍
 - ▷ 09:25~12:30 프랑스 건설재해예방체계(산재보험 포함)에 대해 관계자 발표
 - ※ 프랑스의 건설재해예방활동 분야 설명
 - ▷ 12:30~14:00 중식(Mr. Jean-Claude POIRIER 국장 초청 오찬)
 - ▷ 14:00~16:30 프랑스 CRAMIF 관계자 발표 및 질의 응답
 - ※ 건설재해예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 16:30~17:00 정리 및 강평
-

(1) 방문일시 : 2013. 11. 21(목)

(2) 면 담 자 : Jean-Claude POIRIER(Secretary General)

○ 파리지역 책임자 : Francois BLANCHARD

○ 건설관리 엔지니어 : Bruno BISSON, Guilhem BECAMEL
Pascal GRUDA

(3) 장 소 : Room R 119 CRAMIF 19 place de l'Argonne 75019 PARIS

(4) 주요회의 내용 :

〈 회 의 진 행 〉

▷ 09:00~12:30 프랑스 CRAMIF 관계자 참석 토론

※ 프랑스의 건설안전 체계화와 건설현장내의 건설재해예방활동 분야 토론

▷ 12:30~14:00 중식

▷ 14:00~16:30 프랑스 CRAMIF 관계자 참석 토론

※ 건설현장 방문 후 건설재해예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16:30~17:00 정리 및 강평

▷ 18:00~20:00 석식(정성훈 실장 초청 석식)

나. 프랑스 현행 산업재해예방 활동

(1) 산업재해 법적 적용범위

※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두 개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1) 산업재해 개념

○ 노동법 : 산재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철학을 명시

- 피재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서 치유되어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기에 판정될 경우, 기존의 직장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피재근로자에게 보장

- 피재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그에게 직장 내에서 재배치되어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사회보장법 : 산업재해의 개념과 인정범위 명시

- 산업재해란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종사하고 있는 직무나 직책이 무엇이든지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정의
- “근로중단 재해”란 피재자에게 사고발생 후 만 하루 이상의 근로중단을 초래한 산업재해

⇒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에서 취급하고 있는 산재관련 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

○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권의 원칙”에 기초

- 모든 근로환경과 근로과정에 내재해 있는 ‘직무상 위험’을 인정한다는 사회보험적 원리에 따라 근로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피해자는 사고발생의 책임소재와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도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

※ 피재자의 권리는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제소를 포기하는 대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2) 산업재해 인정범위

○ 산업재해 적용

- 1898년 이후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직업병 및 통근 재해*까지 확대 적용

- * 근로장소와 정기적 성격의 본 거주지 혹은 부 거주지 또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 사이에서 발생한 재해
- * 근로장소와 일반식당, 사내식당 혹은 근로자가 식사를 위해 습관적으로 방문하는 장소 사이에서 발생한 재해
- * 파견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해만 고려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가 아님)

○ 산업재해 적용대상

- 연령, 국적, 성, 임금액, 계약의 형태, 성격, 유효성에 관계없이 봉급생활자 혹은 단일 혹은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근로*하는 모든 사람으로 명시
- * 직위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이 종속 상태에 있는 사람

3) 산재보험의 보험료율

○ 보험료 부담 주체

-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차등 적용

※ 사업장별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따라 산정되며 이러한 보험료와 사업장의 위험과의 관계는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함

- 보험료 차등요율 원칙은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 * 20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및 직업병 발생비용에 따라 사업장별 보험료율이 정해짐
- * 10이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별이 아닌 업종별 보험료율이 적용
- * 10인 ~ 20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비율과 업종별 비율 동시 적용
 - 업종별 집단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어서 해당 사업장 고유의 비율에 의해서 할인 또는 할증

○ 보험료율의 결정

- 매년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에 의해 보험료율 결정
 - * 사업주는 위험의 심각성 등 모든 상황을 지역공단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공단은 매년 정부의 담당 행정부서에서 정해 놓은 보험료율 범위 내에서 결정
- 정기적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장관 포고령에 규정*된 조건 내에서 보험료율 인하 및 추가 부과 권한
 - * 고용주가 취한 예방 및 치료 조치의 긍정적 평가, 위험노출 자재 사용을 통한 예외적 위험 발생 시 예방조치의 불이행 등

(2)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산재예방에 관한 법(1893년)의 주요내용

- 성별 혹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산업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현장 및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사용주가 취하도록 규정
- 이에 대한 감독은 사회보장 관련 부서가 아닌 노동부에서 담당

2)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산재예방 노력

○ 첫째, 산재보험료에 예방 노력 기여율 산정

-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및 직업병 발생 비율이 중요한 산정기준임
- 사업장 안전조치의 채택 여부에 따라 기여금이 추가적으로 부과 혹은 인하
 - 산재예방과 기여율 산정의 연계는 1946년부터 시도되어 1948년, 1954년, 1959년의 개정을 거쳐 1976년에 정착

-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산재 및 직업병의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

○ 둘째,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확보

- 산재 및 직업병 예방기금으로 불리는 이 기금은 산재보험 기여금 중 일정비율(2~3%)의 공제를 통해 확보
- 기금은 공단의 예방사업 지출 지원, 연구기관 연구사업 지원 및 대출, 사업장 산재예방조치 지원, 홍보사업, 예방교육촉진사업 등에 활용

○ 셋째,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관련 기구간 수직적·수평적 긴밀한 연계 형성

- 의료보험중앙공단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 산재예방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의 활동

① 산재예방 목적의 연구활동 촉진

: 연구 및 통계 관련 연구소의 창설을 지원하고(특히, INRS, 연구 및 안전중앙연구소),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소 혹은 활동을 위한 물적 지원 혹은 대여업무 수행

② 지역단위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는 중앙기술위원회 지원

③ 전국기술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 조치에 대한 전국적 확대 실시를 결정

☞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의 활동

① 산하에 기술위원회를 운영,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② 기초공단, 근로감독기구, 위생위원회 등과의 협조하에 특히 산재에 관한 통계처리, 기업 감독과 예방기술 고지, 예방조치 실태가 좋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소개>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업적 위험의 예방 증진, 예방 계약 체결 가능성 증진의 목적으로 시행」

- 기업에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과 예방 목표 협약에 서명
- 특정활동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 위험요인 감소효과가 가시화되어야 함

→ 수평적 연계는 사회보험공단과 연구기관, 공단 활동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는 기구 간의 긴밀한 연계가 특징

☞ 연구 및 안전중앙연구소(INRS)와 밀접한 관계 유지

(INRS,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ecurite)

- ① INRS는 1947년 업무상 위험 예방을 위해 사회보장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지원의 목적으로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에 의해 설립
- ② 파리와 낭시, 두 곳에 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약 600명이 근무
- ③ 연구소의 활동은 조사 및 연구사업*, 정보 제공**, 교육업무*** 담당, 기술 및 의학적 지원****

* 산재 및 근로조건, 화학적 해를 입히는 직업병, 물리적 해를 입히는 직업병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조사 및 연구 진행

** 조사 및 연구 결과 발표 및 예방 홍보효과를 위해 연구소는 정기 간행물, 책자, 홍보물의 제작, 영화 제작 및 상영,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정보제공 활동 수행

*** 산재 및 직업병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설 및 수습교육 실시. 그 대상은 의료보험지역공단 소속 산재문제 기술자, 감독관의 교육에서부터 사업체 안전교육까지 매우 다양

**** 중앙의 관련 행정부처, 의료보험중앙공단 및 지역공단, 근로의학 서비스 등을 통해 제기되는 기술적 혹은 의학적 문제에 관한 의견 개진, 자문 요청에 응답

☞ 산재 및 직업병위원회(Commission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s)

- ① 기여금 산정요소의 결정, 산재 및 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방향제시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5명씩 동수로 구성

☞ 중앙기술위원회(comites techniques nationaux)

- ① 직업적 위험 예방과 관련된 문제의 기술적 연구에 있어서 산재 및 직업병위원회의 지원, 직업적 위험 구분 및 기여율 산정과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분석, 직업적 위험예방에 필요한 규정 도입이 목적으로 권고 및 전국적 조치 등의 개발
- ② 산재예방에 필요한 전국적 조치 중 미처 노동법 등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나 개별 보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부분, 안전통제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 등에 맞추어 활동

※ 결론적으로 의료보험중앙공단을 중심으로 연구활동 위주의 연구 및 안전 연구소(INRS), 기여율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 산재 및 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통계 수집 및 필요한 조치 제언
역할이 현저한 중앙기술위원회 구성·운영

－ 의료보험지역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기구

* 의료보험지역공단의 예방 서비스국과 지방 공공행정 기관인 근로감독국
(Inspection du Travail)간의 협력

→ 의료보험지역공단은 지역 차원에서의 산재 및 직업병 예방에 대한
실질적·본질적 역할을 수행 중이며 그 중 하나가 전국적으로 430개에
달하는 근로감독국간의 협력 부분

→ 1976년 12월 6일 공포된 직업병 예방에 관한 법은 양 부서간 체계적인
정보 교환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기술위원회(comites techniques regionaux)

→ 상부기관인 중앙기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노사 동수 위원으로 구성

→ 지역의 예방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적 위험 예방
조치의 실현을 위해 추가 기여금, 상환, 보조금 지원 등을 제안

다. 프랑스의 산업재해예방 목표 및 집중분야

○ 프랑스에는 국가와 지방조직의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의료보험 및 산업재해에 관한 정보를 산업별 기술위원회로 제공되어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12년의 경우, 3개 분야의 산업*과 4가지 산업사고 요인**을 예방 타겟
(Target)으로 설정하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3개 분야 : 건설업·유통업(슈퍼마켓 등)·비정규직

** 4가지 산업사고 요인 : 화학적 요인(직업성 암 등)·근골격계 질환·운수업에 관
한 사항·정신적인 문제

○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 3대요인은 근골격계 질환, 추락재해, 위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3대 재해에 대한 매뉴얼(위험요인, 기술적인 대책 등)을 제작한 후 사업 개시 전 국가에 신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모든 건설현장에 보급
- 이후,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에서 시행여부 확인·감독하여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료 인상(최대 200%)

라. 프랑스의 산업재해예방 전략

- 프랑스 정부(ETAT)에서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전략보고서는 별도 작성되지 않음
- 그러나, 정부(ETAT)와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이 4년 주기로 산재예방 활동을 포함한 의료·산재보험 운영방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함

※ 2013년 현재, 「2014~2017년 사업내용 마련 중」

- 2010~2013년 계약 내용을 보면, 국가와 체결된 계약내용 7가지, 지역별 우선과제 12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국가와 지역의 계약내용은 중복되지 않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 각 산업별 목표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선언적으로 명기됨

ex) 건설재해 4년간 12% 감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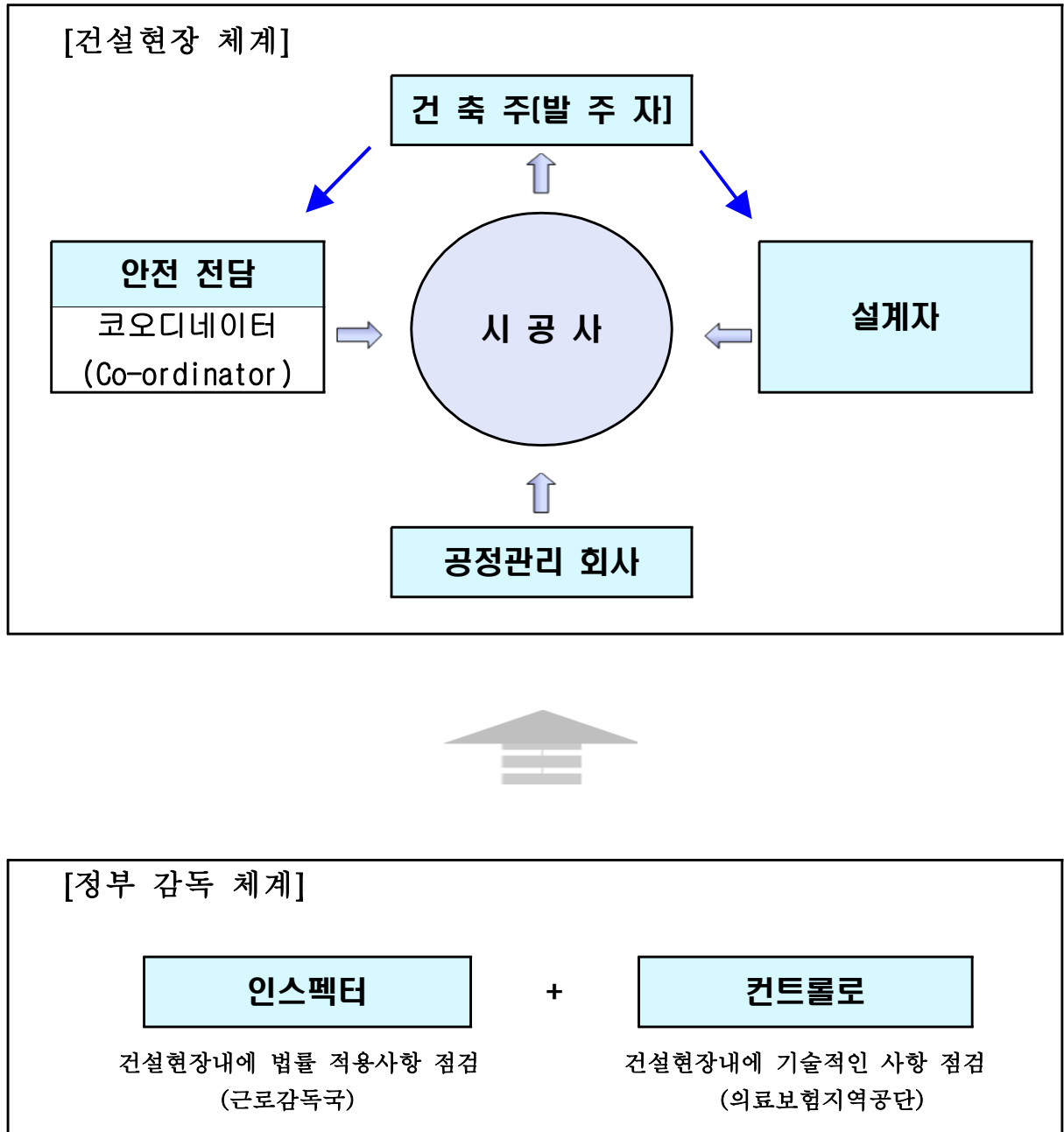
-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을 통해 관련 계약내용을 시행한 후 회계 보고서 작성·제출

※ 경영환경이 변할 경우, 세부사업별 1년마다 수정하여 반영

마. 건설재해예방 전략

(1) 프랑스 건설공사 재해예방 체계

1) 체계도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과 근로감독국의 임무>

근로감독국	의료보험지역공단
1. 노동규정 준수 감시(특히 위생 및 안전분야)	1. 산재 및 직업병 예방 조정, 증진
2. 자유로운 기업방문 권리	2. 일반 체계 가입사업장에 자유로운 방문
3. 노동규정 위반 확인, 소송 작성	3. 정당한 예방 조치 권유
4.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발생시 개입	4. 추가보험료 부과 혹은 상환
	5. 예방 계약체결

2) 공사규모별 운영 현황

구 분	공사 규모	사전계획서 작성 대상	코오디네이터 선임	계획서 수립(심플)*
LEVEL 1	10,000인×일* 이상 현장 (대규모)	○	○	○
LEVEL 2	500인×일 이상~10,000인×일 미만 현장(중규모)	○	○	○
LEVEL 3	500인×일 미만 현장(소규모)	×	○	○

* 일평균 근로자 수×작업일수

3) 건설공사 재해예방 운영 현황

① 코오디네이터(Co-ordinator) 활용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

○ 코오디네이터의 역할

- 건축주(발주자)가 건설공사 착공 전 코오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안전 관련 내용을 조사·계획 수립 및 건설현장내 시공사별 안전관리 업무 총괄

☞ 건설현장내 여러개의 시공사가 있을 경우 서로간 간섭에 대해 안전관리 조정·역할을 위해 코오디네이터 제도 만듦

- 공사규모를 3단계로 운영 중으로 3단계 모두 코오디네이터를 지정 현장 상주 안전관리 운영

○ 코오디네이터의 주요 업무

- 사전계획서 작성·계획 수립시 건축주(설계자) 및 의료보험지역공단 (CRAMIF) 컨트롤러와 도면 등 확인 위험요인 파악 후 사전 안전 계획서 작성

○ 코오디네이터의 자격 및 관리

- 건설분야에서의 오랜 경험 및 일정교육 수료 후 시험 합격자
- 인스펙터 및 컨트롤러가 현장 점검 시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코오디네이터 구속 등 제재 조치
- 프랑스내 코오디네이터 약 5,000명 운영 중임

② 사전심사제 운영

- 근로자 500인×일 이상 현장에 대하여 사전 심사제를 운영 별도의 안전계획서 제출토록 관리

☞ 민간 및 공공 발주기관 처벌 기준

: 공사 착공전 사전 안전계획서 미제출시 발주자 처벌

[인스펙터가 벌금 부과 : 약 5,000유로(한화 약 7,500,000원)]

※ 근로자 500인×일 미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특수 공종(철골작업 등)에 대하여 심플 계획서 작성

③ 컨트롤로 운영

- 전국 8개 지역에 대하여 80명 컨트롤로를 운영 현장 관리감독
(파리지역은 엔지니어 5명과 24명의 컨트롤로 운영)
- 위험사업장의 경우 월1회 방문(특별사업장의 경우 주1회도 방문)

④ 적정공사기간 선정

- 공사기간은 근로자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적정공사 기간 산정 관리
☞ 적정 공사기간을 관리하는 회사를 지정 공사기간 별도 관리

⑤ 벤치마킹 우수 가시설

- 외부비계는 시스템비계를 설치 사용(대형 및 소형 건설현장)
- 근로자 상하 이동시 기성제품을 개발 사용
- 사다리는 작업발판용 사다리 사용
-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차량 하역용 작업대 사용
- 근로자 산재발생시 긴급 이동용 케이지 제작 사용
- 안전난간 설치용 지지대(기성제품) 사용

바. 프랑스 산재보험의 역사

(1) 1898년,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1)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배경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손실, 사용주의 손실, 사용주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실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 → 미제출 시 보호를 받지 못함

※ 근로자의 현실적인 어려움 ①고용주의 과실 증명 어렵고 ②고용주 고소시 적대관계 형성되어 회복 후 복귀 어려움 ③직장동료 증언 확보 어려움 ④사건 해결까지 오랜시간 소요되어 생활상의 어려움 ⑤승소시에도 재판비용 제외 시 실제 보상액은 미비

○ 한계

- 사업주의 책임 보상의 최대 범위를 손실의 약 50%로 규정

※ 보상 부문에만 언급이 있을 뿐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음

(2) 1945~1946년, 혼합형에서 공적사회 보험형으로 전환

- 1) (혼합형) 1945년까지 산재보험의 운영은 공단, 공제조합, 그리고 가장 비중이 높은 민간보험에 의해 운영
- 2) (공적사회 보험형) 1947. 1월 이후 기존의 공제조합이나 민간보험 회사는 소멸되고 사회보험공단이 관리하게 되는 공적사회 보험형으로 전환

<1945년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정부의 구상>

사회적 위험	적용대상	관장기구	운영기관	특징
산업재해 및 직업병	민간부문의 봉급생활자	사회보장 및 공제 조합실	신설된 사회보장 행정기구 ※기초공단과지역공단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화

(3) 1946~최근까지,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변천

1) 1946~1960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새로운 행정기구 조직·운영

- (기초공단) 가입자와의 접촉이 빈번한 의료, 출산, 가족수당, 일시적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
- (지역공단) 가입자와의 접촉 빈도가 적은 노령, 폐질, 사망, 영구적 산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취급
- (중앙공단) 재정 부문, 하위 지역공단간의 조화의 업무를 담당

2) 1960~1967년, 보험료 징수기관의 설립

- 1960년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징수전담기구(URSSAF,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각출연합) 설립

※ 이전까지 징수업무는 도 수준의 기구인 사회보장 기초공단과 가족수당의 경우는 가족수당 공단에서 담당

3) 1967년 이후 최근까지, 관련법 공포('67.8월)로 3가지 원칙 적용

- 사회적 위험분리 원칙
 - 단일화된 사회보장중앙공단이 주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세 개의 기구, 즉 임금생활자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 임금생활자노령보험중앙공단(CNAV-TS), 그리고 가족수당중앙공단(CNAF)로 분리

※ 현재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는 중앙의 의료보험중앙공단, 지역의 의료보험지역공단, 그리고 도의 의료보험기초공단에서 담당

○ 이사회에 노사 동수의 비율 참여 원칙

- 1967년 이전, 임금생활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본 원칙의 실시로
임금생활자와 사용자 대표자가 동일한 비율로 참여

→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사회적 협상자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

○ 공단 이사회 구성원 결정방식의 변화

- 1967년 개혁 이후 임금생활자 및 사용자 대표단체의 호선에 의해
구성원 결정

※ 종전에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투표에 의해 선출

사. 프랑스 사회보호체계

(1) 프랑스 사회보호제도(3가지)

1) 사회보장제도

○ 질병,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출산, 사망·장애, 가족수당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2) 공적부조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층, 아동, 노인들을 위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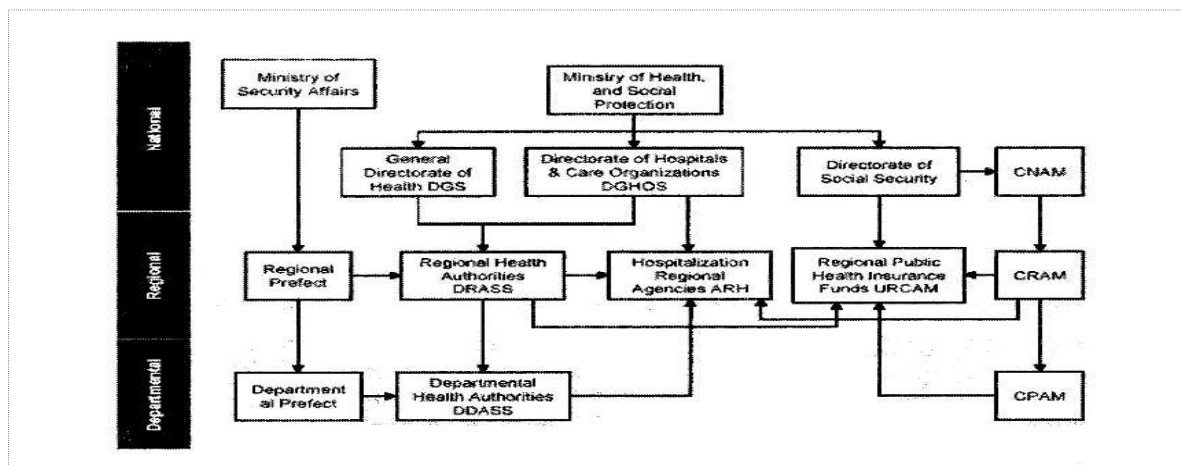
3) 고용보험제도, 보충연금제도 그리고 건강보험의 급여를 보충하는 제도

※ 노사협약에 근거하여 구성된 공제조합이 주체가 되어 운영

(2) 프랑스 사회보호체계 조직(보건의료조직)

1)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보건부는 여러 개의 국(directorate)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국(directorate of health),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 관리국(directorate of hospitals and health care),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을 감독하는 사회보장국(directorate of social security), 장애인 및 노년층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정책국(directorate of social policy), 그리고 지역 및 도 보건사회국(directora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regions and departments, DRASS/DDASS)으로 구분



<프랑스의 보건의료조직도>

2) 공중보건 최고위원회(HCSP, high level committee on public health)

- 보건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
- 보건 문제와 보건의료조직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자문 담당
- 정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보건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국가의 보건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 담당

3) 보건의료 인가 및 평가원(ANAES, national agency for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of health care)

- 1997년 설립, 약 150명 직원(의사, 보건전문가, 경제학자)이 근무 중
- 보건부, 보험조합 및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

※ 실무지침서의 개발 및 배포, 의료인력 훈련을 통한 병원과 보건인력의 기술 향상, 공공 및 민간병원의 인가, 급여대상 의료행위지침 마련 등

4) 기타

- 의료제품 경제성 평가위원회
- 병원 정보관리 기관
- 국가 보건회의

(3) 사회보장제도 운영기관 현황(산재예방 및 보험 중심으로)

▷ 산재보험의 경우, 실질적 업무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질병·출산·장애·사망·산재 및 직업병 관련 보험업무에 대한 관리를 맡는 기구로서 3단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

- ①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
 - ②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광역자치 단위인 지역수준에서 총 16개 설치·운영
 - ③ 의료보험기초공단(CPAM-TS)-중간자치단체인 도 수준에서 129개 설치·운영
-

1) 의료보험중앙공단(CNAM-TS)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재정관리, 의료보험지역공단 등을 감독
 - ※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행정적 성격을 띤 중앙 공공기구로서 법인 및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행정부처의 통제 하에 있음
- 주요 업무

<질병, 출산, 장애, 사망에 관한 사항>

- 출산, 장애, 사망,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서 재정 지원 및 안정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역공단(CRAM), 기초공단(CPAM)이 수행하게 될 위생 예방, 교육, 정보의 증진 및 하위 공단 업무의 상호 조정
- 위생 및 사회 활동의 실질적 실시 및 지역, 기초공단의 업무 조정 수행
- 의학적 통제의 조직 및 지휘, 지역 및 기초공단의 부동산 매매 업무, 부동산 자산관리 통제의 업무, 건강분야 직업과의 협약을 통한 활동 수행, 사회보장 관련 법안 및 명령에 대한 의견 제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

- 중앙기술위원회*의 주도 하에 전국적 예방 조치의 확대 혹은 중지를 결정
 - * 중앙과 광역자치에 설립된 위원회로서 노·사 양측 50%씩 전체 16명으로 구성
- 산재예방에 대한 자문 전문가의 협조하에 지역공단의 예방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
- 해당 분야에 재정안정 유지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 결정에 관한 협력

2) 의료보험지역공단(CRAM-TS)

- 초급금고를 관리하며, 산재예방캠페인과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매년 결정(전국 16개소)
 - ※ Caisse nationale de d'assurance maladie

○ 주요 업무

<산재예방의 개선 및 조정>

-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통계*에 관한 모든 자료 수집 · 정리하여 의료보험중앙공단(CNAM)으로 모아지면 국가기관에 전달
 - * 산재 발생의 원인, 상황, 빈도, 결과(특히, 장애 정도 및 기간 등)

- 지역공단은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예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의료보험중앙공단과 정부의 관련 부처에 보고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생, 안전 및 근로상황위원회에 전달
- 위생 및 안전 상황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사 추진되며 이 조사는 자문 전문가 및 안전감독관*이 수행

* 기술상의 관한 때문에 공단 소속 인력이 아닌 자 중에서 공단의 위촉

- 공단은 조사 결과*를 도의 근로 및 고용국장에게 통지

* 기업 내에 내재된 산재 및 직업병 관련 정보,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된 자재의 분석 결과, 근로환경에 관한 조사 등 포함

※ 근로감독부서 및 의료감독부서는 의료보험지역공단에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자료 그리고 공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

- 고용주에 대해서 예방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개입을 요청

※ 관할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기계 및 동일방법을 사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해서 보편적 예방 조치 채택 가능

<보험료 책정 및 산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협력>

- 공단은 관할지역의 사업체 규모, 위험 정도에 따라 산재 및 직업병분야 기여율을 매년 결정

※ 보험료 결정을 위해 사전에 중앙기구인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는 사회 보장 재정균형 상황에 부합되는 보험료 산정 요소를 결정

- 관할 지역의 고용주에 대한 부가보험료의 산정 및 이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음. 단, 고용주의 의도적 혹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3) 의료보험기초공단(CPAM-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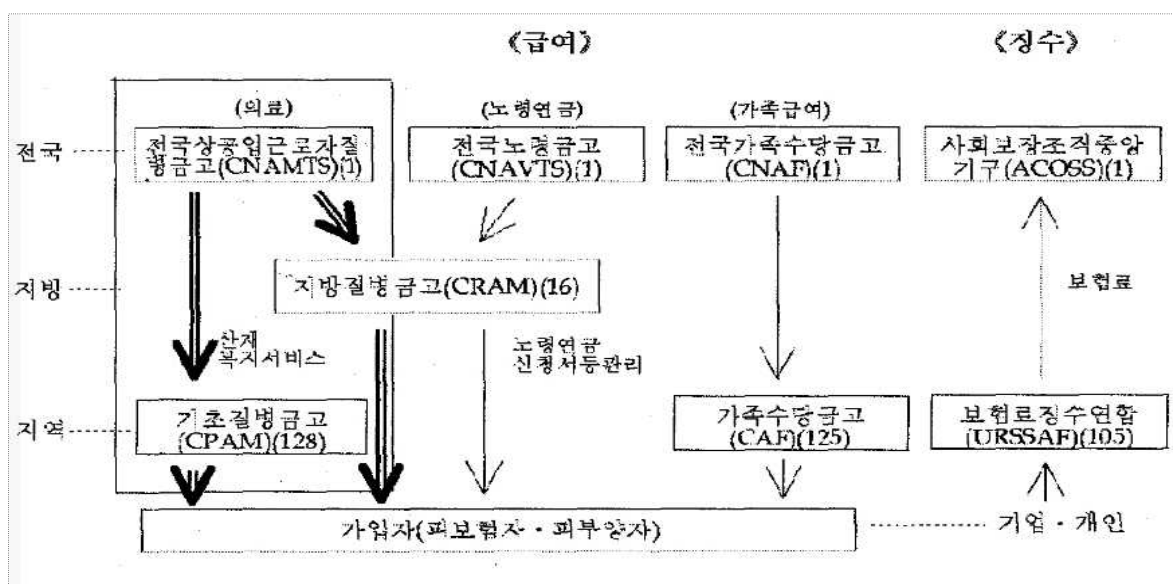
○ 주요 업무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보상업무를 담당(전국129개소)

- 사회보험 가입자의 등록, 노령 및 가족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분야의 급여 제공 그리고 위생 및 사회활동 등

※ 위생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기초공단 이사회는 매년 질병위험과 관리와 관련된 활동계획을 수립, 결정함

- 산재 및 직업병 위험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기초공단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함

※ 재해자로부터 산재발생 신고를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사고발생 통지, 발생사고의 성격 및 정도의 조사, 산재의 판단, 산재관련 급여 제공, 재해자의 관리 등 행정업무의 대부분 담당



<사회보장제도 운영기관>

3. 프랑스 안전보건 우수사업장 방문

가. Conversion D1 Entrepot Mcdonal 건설현장

→ 맥도날드 창고 개조현장 1,2공구(아파트) 현장

(1) 방문일시 : 2013. 11. 19(화)

(2) 면담자 : Johan BONTEMPS(Project Director)

(3) 동행자(CRAM-IF) :

○ 건설관리 엔지니어 : Bruno BISSON

○ 컨트롤러 : Thierry PRUVOST

(4) 공사 개요

○ 발주자 : ParisNordEST

○ 시공사 : Vinci사

○ 공정관리 회사 : Semavip사

○ Co-ordinator : Bureau Veritas

○ 위치 : Boulevard Macdonald (Paris 19th district)

○ 공사비 : 550,000,000€

○ 공사기간 : '13. 1~'15. 7(31개월)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8층, 아파트 1,300세대

(5) 공사 주요 내용

- 1,2공구를 구분하여 1공구 5개동 및 2공구 10개동으로 구성

- 기존 물류창고 구조물을 철거 후 사무실 및 아파트로 개조하는
공사임

- Tower Crane 11대 및 시스템폼을 이용 구조물 작업 시행
(벽체와 슬래브 분리타설 공법 적용)

나. TOUR D2 건설현장

(1) 방문일시 : 2013. 11. 20(수)

(2) 면담자 : Jean-Rene LABONNE(Project Director)

(3) 동행자(CRAM-IF) :

○ 건설관리 엔지니어 : Bruno BISSON

○ 컨트롤러 : Jean-Louis BLANCHARD

(4) 공사 개요

○ 발주자 : Sogeprom + Bouygues Immobilier

○ 시공사 : Vinci사

○ 설계사 : Anthony Bechu & Tom Shehan(AAABTS)

○ Co-ordinator : VERITAS-D.AUBERT

○ 위치 : Avenue D'Alsace La Defense 92400 Courbevoie

○ 공사비 : 172,000,000€

○ 공사기간 : '12. 2~'14. 8(31개월)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37층(h=171m)

(5) 공사 주요 내용

- TOUR D2는 라데팡스라는 프랑스의 새로운 상업지역내에 주거 지역+상업지역 연결 역할
- TOUR D2는 기존건물 CB22를 철거 후 사무실 용도로 신축
- Core + SRC 구조로 Core 선행 후 철골조립 구조물 작업 시행 (Core 벽체와 슬래브 분리타설 공법 적용)
- 외부 커튼월(삼각형 프레임 형태)에 골조는 ACS폼(Peri 폼사용)을 이용 상부 Core 구조물 작업 시행

다. 건설현장 안전보건활동

Vinci社は2012년 글로벌 건설사 Top10내에 진입한 프랑스의 대표적 건설회사로 대표이사의 「안전이 최고」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건설현장내 추락 등의 건설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음

○ 「추락」 재해예방활동

- (현황) 외부 골조 및 마감 작업시 작업발판 단부 등에서 작업 중에 추락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추락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질 소지 있음

- (예방활동)

- ①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가설통로는 기성제품을 개발하여 사용하며 추락위험이 큰 단부측 안전난간 등은 구조물 시공시 안전난간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미리 매설하여 안전난간 등을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② 외부 작업용 비계는 시스템 비계를 전수 설치하여 사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 (현황) 차량 자재 하역 및 기타 건설자재 운반 작업 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요통) 유발 소지 있음

- (예방활동)

- ① 차량 자재 하역 운반 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별도의 작업대를 제작 사용
- ② 현장내에서 건설자재 운반 작업 시 중량물 이동을 최소화토록 장비(양중기)를 사용하는 등 철저히 관리

○ 「근로자 위생관리」 활동

- (현황) 현장내 근로자 위생 및 화기 등 관리 불량으로 개별 질환 유발 소지 있음

- (예방활동)

① 근로자용 샤워실, 식당, 탈의실을 별도 관리 및 내부에서 금연 등을 통한 화재사고예방을 철저히 관리

☞ 내부 금연 시 현장내 경보음 발령 및 가설건물 내 근로자 출입통제(관리감독자 최종 확인 후 근로자 출입조치)

○ 「기타」 재해예방활동

- 간호사 상주 및 개인별 치료일지 작성

① 근로자 200명이상 건설현장 내에 간호사가 항시 상주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과 사고 시 응급조치를 수행

② 응급센터로 찾아오는 근로자 응급조치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별 치료일지를 작성하여 관리

- 사업주·근로자·정부(공무원)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활용

① 새로운 기계설비·물질 등을 사용하기 전,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 협력을 통해 위험부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 사용

※ 프랑스는 사업장별 담당 공무원(Inspector)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상 위험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개선요구 등 권한이 있음

②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근로자·공무원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문제 해결

- 다양한 안전보건활동 전개

- ① 각종 중량물 이송용 달기구, 수리·점검용 공구 및 자재 등 위치를 지정하여 정리정돈 철저히 하는 등 관리
- ② 현장내 근로자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생활화
- ③ 현장 공정별 재해발생 통계 등 관련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조치사항, 작업공정도 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 노력

(4) 소감

- 프랑스의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은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사업장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에 기인
 - 프랑스 정부기관인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 소속의 컨트롤러(Controller)가 사업장을 담당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또한, 컨트롤러(Controller)의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 시, 최고 200%의 산재보험요율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은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다만, 프랑스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아직 미흡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예방 기법 및 교육 등의 체계가 미수립되어 있으며, 건설회사 및 정부기관에서 애로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음

Ⅲ. 출장 종합소감

□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관리 미흡 시 발주자 처벌기준 시행

- 건설현장 착공 전 사전 안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안전계획서 미제출시 발주자에게도 처벌기준 시행

<시사점>

- ☞ 한국도 사전심의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실시 중이나 미제출시 사업주에게만 처벌기준을 시행, 발주자는 안전관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실정임
 - 발주자에게 처벌기준 시행 시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건설현장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 공사기간은 근로자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야간작업 및 1일 2교대 등 무리한 작업을 미연에 방지
- 적정 공사기간을 위해 원청회사에서 입찰시 적정 공사기간을 책정하여 입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공사기간 동안 공정관리 회사를 별도로 운영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 관리

<시사점>

- ☞ 공사 착공전부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후 설계변경 사항을 미리 찾아내어 발주자와 계약 전 협의를 통해 적정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설정 무리한 돌관공사 등을 미연에 예방
 - 적정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반영 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Co-ordinator를 활용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 규모에 관계없이 Co-ordinator가 현장에 상주 전반적인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운영
-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도 Co-ordinator가 특수한 경우(철골작업 등) 사전 계획서 수립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지고 운영

* 건설현장 내에 안전관련 문제 발생시 Co-ordinator 구속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함

□ 「안전제일」의 재해예방활동 전개

- 프랑스 Vinci 社の 경우, 근로자에게 자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비치*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지켜야할 기본 작업안전수칙, 각 작업부위별 안전작업 순서, 기타 안전보건사항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제공 및 비치 중임
- 또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이 생활화되어 있음

□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등 제재 조치

- 프랑스에서는 매년 국가·지역기술위원회에서 예방 타겟(Target)을 설정하여 산업과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있음
- 의료보험지역공단(CRAMIF)의 컨트롤러(Controller)들이 타겟(Target)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산재보험료를 최대 20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는 등 예방전략 실시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근거 마련과 예방 활동과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법안을 개정('13.5월)함.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두가지(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예방활동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결정

→ 프랑스에서는 예방활동보다는 전문가의 책임 전담제에 따라 자문 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증여부 결정

☞ 프랑스에서 산재예방 전략은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예방+보험 연계 방안으로 판단됨

□ 사고원인에 대한 관련기관의 근원적인 안전조치 노력

-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기관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동일업종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 프랑스에서는 관련 건설현장에도 사고내용을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내용 개선 사항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우리나라와 동일)